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3호 태풍 '링링' 복상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4694호(2019.9.2.)와 관련입니다.
2. 제13호 태풍 '링링'이 9.6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태풍에 의한 건설현장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지시사항에 따라 각 발주 및 인·허가 기관에서는 태풍 영향 이전 대비태세 점검, 모의훈련 실시 등 철저한 비상태세를 갖추고 태풍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공사장에 대해서도 공사중지를 전파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가. (공공공사) 타워크레인, 비탈면 공사 등 태풍 취약 공종에 대해서는 붙임의 매뉴얼을 고려해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고, 특히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강풍 및 호우 등 태풍의 영향을 받는 공종에 대하여 태풍경보 지역 및 발효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 중지) 참조
 - *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참조
 - 나. (민간공사) 민간부문 공사장에도 공사중지 내용 등을 전파하고, 각 현장들이 관련 법령 및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3. 아울러, 장마철 많은 비로 지반이 연약한 상태이므로 급경사, 옹벽, 축대 등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및 사전조치 등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및 붙임문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관과01-165, 서구1-25, 서사01-42, 서상수1-40,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수사관 이득규 / 노후시설안전팀장 代 김영일 / 시설안전과장 09/02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2705 (2019.9.3.) 접수 치수과-3029 (2019.9.3.)
우 /
전화 /전송 / ap0522@seoul.go.kr / 대시민공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1. 제13호 태풍 '링링'이 9.6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태풍에 의한 건설현장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시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태풍 영향 이전 대비태세 점검, 모의훈련 실시 등 철저한 비상태세를 갖추고 태풍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시·도 등 지자체에서는 민간부문 공사장에 대해서도 공사중지를 전파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가. (공공공사) 타워크레인, 비탈면 공사 등 태풍 취약 공종에 대해서는 붙임의 매뉴얼을 고려해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고, 특히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강풍 및 호우 등 태풍의 영향을 받는 공종에 대하여 태풍 경보 지역 및 발효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 중지) ①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 (민간공사) 민간부문 공사장에도 공사중지 내용 등을 전파하고, 각 현장들이 관련 법령 및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2. 아울러, 장마철 많은 비로 지반이 연약한 상태이므로 급경사, 옹벽, 축대 등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및 사전조치 등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용노동부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매뉴얼(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강풍 관련 규정. 끝.

국토교통부 장관



수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서울특별시시장, 부산광역시시장, 인천광역시시장, 대구광역시시장, 울산광역시시장, 대전광역시시장, 광주광역시시장, 강원도지사,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주무관 장형석 시설사무관 장은석 건설안전과 과장 전결 09/02
한명희

협조자

시행 건설안전과-4694 (2019.09.02.) 접수 시설안전과-12695 (2019.9.2.)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575 / 전송 02-2110-0695 / jhs0116@molit.go.kr / 비공개(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8. 14] [고용노동부령 제225호, 2018. 8. 1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 화학물질) 044-202-7756, 7757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보건기준, 밀폐공간) 044-202-7746, 7747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건설 등 안전기준) 044-202-7729, 7728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中震)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을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사용 또는 험거운 결선(結線)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관 승강기

제161조(폭풍에 의한 도괴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도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2조(조립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행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합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제340조(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흠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① 사업주는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약 또는 폭약의 장전 작업을 중

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발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면(前面)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60조(작업의 중지 등) ①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낙반·출수(出水)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재해발생위험을 관계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 등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그 설치장소를 관계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378조(작업의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잠함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377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2.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제383조(작업의 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